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에 해당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분할된 산업단지시설용지의 위치 및 획지의 형상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분양을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촉진하고자 함.(안 제16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9. 30 ~ 10. 26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,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인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0조(분양가격의 결정 등)를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·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.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다양화·차별화하여 성공적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비용부담 납입을 위해서 제정당시 부적합한 가산금 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100의 5에서 100의 3으로 개정(안 제31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0. 17 ~ 11. 07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41조 및 「국세 징수법」 제21조 조항과 일치되도록, 성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배출 부과금 미납할 경우, 가산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